



---

# 의정활동보고서

---



제265회 임시회(2013. 10. 10 ~ 10. 24)



경 상 북 도 의 회



##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문화와 독도의 달인 10월을 맞아 오늘부터 보름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정책연구 세미나와 지역단위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에서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의 성공적인 개최와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하는 등 도정의 글로벌화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2013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에서 도 지역 1위를 차지하는 등 도정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데 대하여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께서는 철저한 자료 수집과 충분한 연구를 통해 내실 있는 도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도정질문과 행정사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새로운 시책 발굴과 예산 확보를 통해 도민이 살맛나는  
행복한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9월 24일 제13대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가 함께 성원해 주신 결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만큼이나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도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 차 례

I. 개 황	249
II. 의사일정	252
III. 의안처리	259
IV. 민원처리	261
V. 본회의 보고사항	263
VI. 5분 자유발언	295
□ 홍광중 의원(교육위원회)	295
□ 김창숙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299

부 록

□ 조례안(19건) ..... 305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65회 임시회는 2013년 10월 10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10월 24일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7회의 상임위원회 및 2개 특위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0월 10일(목)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김원석 의원의 “마이스터 운동 활성화 방안, 영·유아사망률과 소아전용응급실 설치, 도내 승마장 건립 및 운영 실태, 영재교육 정책”과 이상용 의원의 “여성농업인 건강관리지원, 나 홀로 노인 지원, 지방도 선형 개량공사, 도내 토요일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기능” 등에 관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홍진규 의원의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취업실태, 도내 물산업 발전” 과, 박기진 의원의 “남부권 신공항 유치추진 대책, 취득세 인하에 따른 도차원의 대책, 도로교통망 시설확충,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대책, 쌀관세화 대책, 공무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수급대책, 무료법률 상담실운영 활성화, 여름방학 기간조정” 등에 관한 다양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또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 사임에 따라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 위원장에 나기보 의원(김천), 부위원장에 김창숙 의원(비례)이 선임되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홍광중 의원의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와 김창숙 의원의 “학교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촉구”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곧이어 안전심사가 이어졌다.

조례안에 있어서는 1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안 2건 등 총2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조례안중 “경상북도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 위원장에 고우현 의원(문경), 부위원장에 이영식 의원(안동)이 선임되었다.

이 밖에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지 방문, 연찬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기획경제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는 합동 연찬회를 실시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소관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좀더 깊이 있고 폭넓은 심사를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연찬회는 전문가 초청 특강과 복지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 현장체험 등을 통해 의원간의 공감대 형성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소관 업무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타 지역 특화사례 비교 체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위원 상호간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연찬회를 가졌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경북농민사관학교를 방문하여 업무보고 및 손재근 FTA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도청 시대 경북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난 후 영천 경마공원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간담회 및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정치환경 변화에 대응한 의정활동 전략 강화와 전남도청이 위치한 남악신도시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해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 북부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등 상임위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 II. 의사일정

###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임시회
-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 다. 집회일시 : 2013년 10월 10일(목) 14:00

###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3년 10월 10일 ~ 10월 24일(15일간)
-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71회)
  - 위원회

(단위 : 건)

구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9	1	1	1	1	1	1	1	.	2
누 계	397	32	51	52	44	36	50	43	47	42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 3. 활 동

####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0(목)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li> <li>○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li> <li>○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li> <li>○ 휴회의 건</li> </ul> <input type="checkbox"/>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원석 의원(교육위원회)</li> <li>○ 이상용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영양)</li> </ul>	
10. 11(금)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진규 의원(건설소방위원회/군위)</li> <li>○ 박기진 의원(문화환경위원회/성주)</li> </ul> <input type="checkbox"/>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input type="checkbox"/>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10. 24(목)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광중 의원(교육위원회)</li> <li>○ 김창숙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li> </ul>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li> <li>○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li> <li>○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24(목) 11:00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교육개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li> <li>○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li> <li>○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li> <li>○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li> <li>○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 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li> <li>○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li> <li><input type="checkbox"/>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li> <li><input type="checkbox"/>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li> </ul>	

## 나. 상임 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8(금) 11:00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기획경제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1(금) 15:00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 ○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4(월) ~ 10. 15(화)	<input type="checkbox"/> 기획경제위원회·교육위원회 합동 의원 연찬회 - 경남 양산 통도사 일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4(월) 10:00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li> <li>○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li> <li>○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li> <li>○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li> <li>○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 건</li> </ul>	
10. 15(화) ~ 10. 17(목)	<input type="checkbox"/> 의원 연찬회 - 제주도 일원	

<문화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1(금) 10:00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 건</li> </ul>	
10. 21(월) ~ 10. 22(화)	<input type="checkbox"/> 의원 연찬회 - 경기도 용인시, 김포시 일원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4(월) 10:00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10. 15(화) ~ 10. 16(수)	<input type="checkbox"/> 의원 연찬회 - 경북농민사관학교(군위), 영천경마공원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4(월) 10:30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 건	
10. 15(화) ~ 10. 16(수)	<input type="checkbox"/> 의원 연찬회 - 전남 목포, 전북 남원 일원	

〈교육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0(목)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	
10. 11(금) ~ 10. 12(토)	<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회·도교육청 연찬회 - 구미	
10. 14(월) ~ 10. 15(화)	<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합동 의원 연찬회 - 경남 양산 통도사 일원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0(목)	<input type="checkbox"/>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24(목)	<input type="checkbox"/>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Ⅲ. 의안처리

(단위 : 건)

구 분	접수 (부의)	심의·의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24 (488)	25 (478)	21 (381)	3 (92)	(4)	1 (1)	(3)	(7)	폐안- 2012 접수	
조 례 안	소 계	19 (301)	20 (292)	16 (213)	3 (74)	(4)	1 (1)	(3)	(6)	
	의 회 제 안	17 (148)	17 (142)	14 (107)	3 (35)			(2)	(4)	
	도지사 제 출	2 (104)	3 (102)	2 (78)	(22)	(1)	1 (1)	(1)	(1)	
	교육감 제 출	(49)	(48)	(28)	(17)	(3)			(1)	
규 칙 안	(3)	(3)	(3)							
예산·결산	(25)	(25)	(8)	(17)						
동의·승인	2 (39)	2 (39)	2 (38)	(1)						
건의안	(3)	(3)	(3)							
결의안	(3)	(3)	(3)							
기 타 안	1 (37)	1 (36)	1 (36)					(1)		
	2 (80)	2 (80)	2 (80)							

※ ( )내는 제9대 의회 누계임.

□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7건)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7. 7, 이 달 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12. 11, 전찬걸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12. 17, 황이주 의원 외 3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 '13. 5. 16, 배수향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유보)
- 경북북부권내 지방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  
( '13. 8. 13, 김명호 의원 외 12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8. 13, 교육감, 교육위원회 심사유보)

## IV. 민원처리

###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4		4	3	1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 2. 진 정

####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 (115)				1					
의 회 영	(2)									
기 경 제	(13)									
행 정 보건복지	(21)									
문 화 환 경	(8)									
농 수 산	(5)									
건 설 소 방	1 (61)				1					
교 육	(5)									
특 별 위 원 회										

※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 나. 처 리

(단위 : 건)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10)	(110)				1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환경						
농 수 산						
건설소방						1
교 육						
특별위원회						

※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 V. 본회의 보고사항

### I. 의안 접수사항 : 20건(조례안 19, 동의안 1)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장세헌 의원 외14인 (2013. 9. 27)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2013. 10. 1)
도기욱 의원 외1인 (2013. 9. 27)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기획경제 (2013. 10. 1)
황이주 의원 (2013. 9. 30)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세호 의원 (2013. 9. 27)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13. 9. 2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자근 의원 (2013. 9. 24)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3. 10. 1)
고우현 의원 외6인 (2013. 9. 30)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박병훈 의원 외3인 (2013. 9. 30)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
황이주 의원 (2013. 9. 30)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이경임 의원 (2013. 9. 30)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3. 10. 1)
황이주의원 외 10인 (2013. 9. 30)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13. 9. 27)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김말분 의원 (2013. 9. 27)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 (2013. 10. 1)
나기보의원 외 4인 (2013. 9. 30)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
정영길의원 외 10인 (2013. 9. 30)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
건설소방위원회 (2013. 10. 14)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13. 10. 14)
김하수 의원 (2013. 9. 27)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건설소방 (2013. 10. 1)
이시하의원 외 2인 (2013. 9. 27)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영석의원 외 4인 (2013. 9. 27)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 조례공포 사항 : 23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3. 9. 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2013. 9.16 (제3454호)
"	"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455호)
"	"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3456호)
"	"	경상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 (제3457호)
"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458호)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459호)
"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60호)
"	"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 (제3461호)
"	"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013. 9.16 (제3462호)
"	"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63호)
"	"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64호)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465호)
"	"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3466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3. 9. 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	" (제3467호)
"	"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468호)
"	"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 (제3469호)
"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	" (제3470호)
"	"	경상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71호)
"	"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472호)
"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73호)
2013. 9. 6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 (제3451호)
"	"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3452호)
"	"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53호)

### 3. 기타 의정활동 사항

#### 【도 단위 행사】

-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 기 간 : 2013. 9. 5(목) ~ 9. 17(화)
  - 장 소 : 도내 사회복지시설
  - 참 석 : 전 의원
  
-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주지사 일행 방문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3. 9. 6(금) 18:00
  - 장 소 : 경주 요석궁
  - 참 석 : 최학철 의원
  
- 선비문화구미포럼 참석
  - 일 시 : 2013. 9. 7(토) 10:00
  - 장 소 : 경상북도 환경연수원(구미시 남통동 소재)
  - 참 석 : 박태환 의원
  
- 경북 아너소사이어티클럽 창단식 및 자원봉사활동 참석
  - 일 시 : 2013. 9. 7(토) 11:00
  - 장 소 : 아동복지시설 대자원(경주시 천북면 소재)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국제웅변스피치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9. 7(토) 18:0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장경식·장세현·김말분 의원

○ 의회사무처 주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9. 9(월) 10:30
- 장 소 : 칠곡 왜관시장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희원·추재천 의원
- ※ 의회사무처 직원 47명 참석

○ 으뜸·건강 음식점 현판식 참석

- 일 시 : 2013. 9. 9(월) 15:00
- 장 소 : 경산 백자산식육식당
- 참 석 : 김영식 의원

○ 경상북도와 함께하는 독도강연회 참석

- 일 시 : 2013. 9. 9(월) 16:00
- 장 소 : 영남대학교 인문관 강당
- 참 석 : 장경식·서정숙 의원

○ 제2회 경상북도지사배 대구경북출향인 전국골프대회 시상식 참석

- 일 시 : 2013. 9. 9(월) 18:00
- 장 소 : 영천시 고경면 오펠CC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제2회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3. 9. 10(화)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윤창욱 의원

- 영천경제자유구역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3. 9. 10(화) 16:00
  -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대구시 신천동 소재)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전국 초·중학교 체조경기대회 참석
  - 일 시 : 2013. 9. 11(수) 09:30
  - 장 소 : 포항 포스코체육관
  - 참 석 : 장경식·장세현·김말분 의원
  
-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대상자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3. 9. 11(수) 10:30
  - 장 소 : 대구경북영어마을(칠곡군 지천면 소재)
  - 참 석 : 추재천 의원
  
- 영주 단산저수지 담수식 참석
  - 일 시 : 2013. 9. 11(수) 11:00
  - 장 소 : 영주 단산저수지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김종천 의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방문
  - 일 시 : 2013. 9. 11(수) 11:00
  - 장 소 : 경산 (주)진성테크
  - 참 석 : 김영식·김창숙·배한철 의원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3. 9. 11(수) 14:00
  - 장 소 : 도청 제2회의실
  - 참 석 : 이태식 의원
  
-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9. 11(수) 19:00
  - 장 소 : 칠곡보 일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희원·추재천 의원
  
- **2013년 경북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3. 9. 12(목) 10:00
  - 장 소 : 구미 금오산호텔
  - 참 석 : 구자근·박태환·이태식 의원
  
- **낙동강지구전투 전승기념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9. 12(목) 10:30
  - 장 소 : 칠곡 왜관읍 일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희원·추재천 의원
  
- **남부권 신공항 범도민 대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3. 9. 12(목) 14:00
  - 장 소 : 대구 EXCO
  - 참 석 : 박진현·채옥주·장두욱 위원장, 이시하·고우현·김영기·김종천·장경식·김말분·김희수·윤성규·홍진규 의원

- 대구·경북 섬유 패션업계 CEO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3. 9. 12(목) 15:00
  - 장 소 : 경주 코오롱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경북 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3. 9. 13(금) 10:0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 LG디스플레이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3. 9. 13(금) 10:3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장영석 의원
  
- 제63주년 영천대첩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3. 9. 13(금) 12:00
  - 장 소 : 국립영천호국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3. 9. 13(금)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희원 의원

- 영주 명품재활요양병원 개원식 참석
  - 일 시 : 2013. 9. 13(금) 14:00
  - 장 소 : 영주 가흥동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김종천 의원
  
- 정전 60주년 낙동강지구전투 전승행사 참석
  - 일 시 : 2013. 9. 13(금) 14:20
  - 장 소 : 칠곡 석적읍 낙동강 둔치
  - 참 석 : 송필각 의장, 채옥주 위원장
  
-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참관
  - 일 시 : 2013. 9. 13(금) 17:00
  - 장 소 : 칠곡보 생태공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 경북 지체장애인 실무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3. 9. 13(금) 11:00
  - 장 소 : 영주 풍기호텔
  - 참 석 : 김종천 의원
  
- 경주 세계피리축제 만파식적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9. 13(금) 19:30
  - 장 소 : 경주예술의 전당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 달 의원

- 경상북도 청소년연합 주최 청소년응변대회 참석
  - 일 시 : 2013. 9. 14(토) 10:00
  - 장 소 :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포항시 양덕동 소재)
  - 참 석 : 김원석 의원
  
- 낙동강세계평화 문학대향연 참석
  - 일 시 : 2013. 9. 14(토) 16:00
  - 장 소 : 칠곡보 생태공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 2013 향사 박귀희 명창 20주기 기념공연 참석
  - 일 시 : 2013. 9. 14(토) 19:00
  - 장 소 : 칠곡보 생태공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 낙동강 호국길 자전거 대행진 참석
  - 일 시 : 2013. 9. 15(일) 09:30
  - 장 소 : 칠곡보 생태공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희원 의원
  
-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행사 참석
  - 일 시 : 2013. 9. 16(월) 10:30
  - 장 소 : 안동·군위 일원
  - 참 석 : 김명호·이영식·홍진규 의원

- 제7회 건축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3. 9. 16(월)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윤성규·홍진규 의원
  
- 안전한 추석보내기 및 남부권신공항 조기건설 홍보캠페인 참석
  - 일 시 : 2013. 9. 17(화) 10:20
  - 장 소 : 구미T/G, 구미역 광장
  - 참 석 : 심정규 의원
  
- 2013 추석장사 씨름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9. 17(화) 11:00
  - 장 소 : 경산실내체육관
  - 참 석 : 김창숙 의원
  
- 뮤지컬 「왕의 나라」 공연 참관
  - 일 시 : 2013. 9. 20(금) 19:00
  - 장 소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 참 석 : 김명호·이영식 의원
  
- 의원연구단체 임업발전연구회 세미나 참석
  - 일 시 : 2013. 9. 23(월) ~ 9. 24(화)
  - 장 소 : 강원도 춘천시
  - 참 석 : 김기홍·김영기·장세현·김말분·김창숙·최우섭·  
한창화·홍광중 의원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합 임시회 참석**
  - 일 시 : 2013. 9. 24(화) 10:00
  -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대구시 신천동 소재)
  - 참 석 : 김희수 의원
  
-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3. 9. 24(화) 11:00
  - 장 소 : 상주실내체육관
  - 참 석 : 고우현·강영석·이경임 의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 일 시 : 2013. 9. 24(화) 15:30
  - 장 소 : 제주그랜드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 **경북 제1지구 친선게이트볼 대회 참석**
  - 일 시 : 2013. 9. 25(수) 11:00
  - 장 소 : 구미시민운동장
  - 참 석 : 윤창욱·김봉교 의원
  
- **도시철도 경산연장 개통 1주년 기념 「경산시 교통정책 학술 심포지엄」 참석**
  - 일 시 : 2013. 9. 25(수) 14:00
  - 장 소 :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 참 석 : 김영식 의원

- **대경일보 본사 이전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9. 25(수) 14:00
  - 장 소 : 대경일보 사옥(포항시 대잠동 소재)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채옥주 위원장
  
- **제2회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 참석**
  - 일 시 : 2013. 9. 25.(수) 15:00
  - 장 소 : The-K 경주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 달 의원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3. 9. 25(수) ~ 9. 26(목)
  - 장 소 : 경남 사천시, 산청군
  - 참 석 : 장세현 · 김창숙 · 이경임 · 이정호 · 홍진규 의원
  
- **이북도민 합동 망향제 참석**
  - 일 시 : 2013. 9. 26(목) 11:30
  - 장 소 : 영덕삼사해상공원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김기홍 의원
  
- **경북문화포럼 참석**
  - 일 시 : 2013. 9. 26(목) 14:00
  - 장 소 : 경주현대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 달 의원

- 제40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3. 9. 27(금) 11:00
  - 장 소 : 경주 호텔콩코드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제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3. 9. 27(금) 14:00
  - 장 소 : 구미코(구미시 산동면 소재)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채옥주 위원장, 윤창욱·구자근·  
심정규·이태식·최우섭 의원
  
- 잠사곤충사업장 청사 준공식 및 누에와 나비 체험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3. 9. 27(금) 16:00
  - 장 소 : 상주 잠사곤충사업장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정상진 위원장, 이시하·고우현·  
강영석 의원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9. 27(금) 18:30
  - 장 소 : 안동 탈춤공원
  - 참 석 : 김명호·이영식·홍광중 의원
  
- 경상북도 명품 마을·사회적기업 한마당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9. 27(금) 18:30
  - 장 소 : 서울 청계광장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 제17회 봉화송이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9. 27(금) 19:00
  - 장 소 : 봉화체육공원
  - 참 석 : 권영만·이경임 의원
  
-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 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9. 28(토) 10:00
  - 장 소 : 안동 시민생활체육공원
  - 참 석 : 김명호·이영식 의원
  
- 제7회 경북 사회복지사협회 체육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9. 28(토) 10:30
  - 장 소 : 예천군 공설운동장
  - 참 석 : 도기욱 의원
  
- 2013 지구촌유학생 어울림 한마당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9. 28(토) 14:00
  - 장 소 : 경산생활체육공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세호·배한철·서정숙·윤성규 의원
  
- 경상북도 치매극복 비전 선포식 참석
  - 일 시 : 2013. 9. 30(월) 15:00
  - 장 소 : The -K 경주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병훈·채옥주 위원장, 이상효·이 달·최우섭·최학철 의원

- 제2회 낙동강 국제물주간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9. 30(월) 17:00
  - 장 소 : 경주예술의 전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병훈·채옥주 위원장, 이상효·이달·장경식·최우섭·최학철 의원
- 경주 국제물포럼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3. 10. 1(화) 09:30
  - 장 소 : The-K 경주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 달 의원
- 제21회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참석
  - 일 시 : 2013. 10. 1(화) 10:00
  - 장 소 : 안동 탈춤공원
  - 참 석 : 이영식 의원
- 2013 상주농업기계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3. 10. 1(화) 11:00
  - 장 소 : 상주 북천시민공원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강영석·곽광섭·나기보·나현아·정영길·한창화 의원
- 2013 경상북도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0. 1(화) 13:30
  - 장 소 : 상주 실내체육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전찬걸·정상진 위원장, 고우현·권영만·강영석·곽광섭·나기보·나현아·배수향·이경임·정영길·한창화 의원

-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3. 10. 1(화) 18:30
  - 장 소 : 대구은행 본점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안전지킴이운동본부 주최 학부모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3. 10. 2(수) 10:00
  - 장 소 :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 참 석 : 김원석 의원
  
- **구미 국제물산업전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수) 10:30
  - 장 소 : 구미코(구미시 산동면 소재)
  - 참 석 : 구자근·김봉교·심정규·이태식 의원
  
- **제14회 국민화합 영호남 전진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0. 2(수) 14:0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구자근·김봉교·심정규·이경임·  
이태식 의원
  
- **경북 한우경진대회 시상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수) 16:00
  - 장 소 : 안동 낙동강둔치
  - 참 석 : 송필각 의장, 정상진 위원장, 김명호·나현아·  
이왕식 의원

- 제4회 경북 쌀전업농 회원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0. 2(수) 16:30
  - 장 소 : 의성 안계체육공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정상진 위원장, 곽광섭·나기보·나현아·  
이왕식·정영길·최학철·한창화 의원
  
- 상주국제청소년 물체험 캠프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수) 17:00
  - 장 소 : 상주실내체육관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강영석 의원
  
-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참석
  - 일 시 : 2013. 10. 3(목) 18:00
  - 장 소 :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병훈 위원장
  
- 범도민 녹색문화제 참석
  - 일 시 : 2013. 10. 4(금) 10:30
  - 장 소 : 안동시 낙동강둔치
  - 참 석 : 김명호·배수향 의원
  
-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농촌지도자 다짐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0. 4(금) 11:00
  - 장 소 : 영천강변공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정상진·김수용 위원장, 권영만·  
강영석·곽광섭·변우정·정영길·한창화 의원

- 제13회 경북과학축전 개막식 및 2013년 경북청소년 페스티벌 참석
  - 일 시 : 2013. 10. 4(금) 14:00
  - 장 소 : 울진엑스포공원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황이주 의원
  
- KTX 포항역사 신축공사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3. 10. 4(금) 15:00
  - 장 소 : 포항역사 신축부지(포항시 흥해읍 소재)
  - 참 석 : 장경식 · 장세현 · 김말분 · 김희수 의원
  
- 제6회 경북 식품박람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10. 4(금) 17:00
  - 장 소 : 서울 aT센터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이경임 의원
  
- 제7회 경상북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참석
  - 일 시 : 2013. 10. 4(금) 17:30
  - 장 소 : 경주시 황성공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위원장
  
- 경북예술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10. 4(금) 19:00
  - 장 소 : 구미문화예술회관
  - 참 석 : 구자근 · 심정규 의원

○ 2013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0. 5(토) 09:00
- 장 소 : 경북대 상주캠퍼스
- 참 석 : 송필각 의장, 장두욱 위원장, 이시하·권영만·윤창욱·  
강영석·김명호·김희원·나기보·배수향·이왕식·  
홍진규 의원

○ 제23회 경상북도민 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3. 10. 5(토) 17:00
- 장 소 : 김천종합운동장
- 참 석 : 송필각 의장, 장두욱 위원장, 이시하·권영만·윤창욱·  
나기보·나현아·배수향·이왕식·정영길·한창화 의원

○ 대구KBS 일요진단 독도 관련 방송대담 출연

- 일 시 : 2013. 10. 6(일) 08:10
- 장 소 : 대구KBS
- 참 석 : 장경식 의원

○ 한류드림 페스티벌 참석

- 일 시 : 2013. 10. 6(일) 18:00
- 장 소 : 경주시민운동장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병훈 위원장, 이달·최우섭 의원

-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3. 10. 7(월) 11:00
  - 장 소 : 청도 국민체육센터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교육 참석
  - 일 시 : 2013. 10. 7(월) 13:00
  - 장 소 : 경산시 시립박물관
  - 참 석 : 김창숙 의원
  
-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개원식 및 기념세미나 참석
  - 일 시 : 2013. 10. 7(월) 14:00
  - 장 소 : 대구대학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2013 경북 교육발전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3. 10. 7(월) 16:00
  - 장 소 : 까브스토리(영천시 금호읍 소재)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서호주의회 의장단 접견
  - 일 시 : 2013. 10. 7(월) 16:30
  - 장 소 : 의장 집무실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성만·한혜련 부의장, 박병훈·박진현·  
채옥주·전찬걸·정상진·장두욱·김수용 위원장

- 2013 경북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 참석
  - 일 시 : 2013. 10. 8(화) 10:30
  - 장 소 : 안동대학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시·군 단위 행사】**

- 현곡농협 신금장지점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3. 9. 4(수) 10:00
  - 장 소 : 경주 현곡면 금장리
  - 참 석 : 최학철 의원
- 제2회 의성군 사회복지 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3. 9. 6(금) 14:00
  - 장 소 : 의성 문화회관
  - 참 석 : 이왕식 의원
- 제5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참석
  - 일 시 : 2013. 9. 8(일) 10:00
  - 장 소 : 상주 북천시민공원
  - 참 석 : 강영석 의원
- 2013 구미 새마을마라톤대회 참석
  - 일 시 : 2013. 9. 8(일) 10:00
  - 장 소 : 구미 시민운동장
  - 참 석 : 장영석 의원

- **독립기념관 독도영토 주권수호행사 참석**
  - 일 시 : 2013. 9. 9(월) 10:00
  - 장 소 : 독도 물양장
  - 참 석 : 이용진 의원
  
- **구미공사립유치원연합회 부모교육 참석**
  - 일 시 : 2013. 9. 10(화) 10:00
  - 장 소 : 경상북도 교육연수원(구미시 남통동 소재)
  - 참 석 : 박태환 의원
  
- **장사상륙작전 전몰용사 합동위령제 참석**
  - 일 시 : 2013. 9. 10(화) 11:30
  - 장 소 : 장사해수욕장 전몰용사 위령탑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3. 9. 11(수) 09:00
  - 장 소 : 포항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이정호 의원
  
- **경북 농축산업 6차 산업화 방안 포럼 참석**
  - 일 시 : 2013. 9. 11(수) 09:30
  - 장 소 : 예천 청소년수련관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배 전국 초·중 체조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9. 11(수) 10:00
  - 장 소 : 포항제철중학교 체조 경기장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 바르게살기 문경협의회 화합한마당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9. 11(수) 10:00
  - 장 소 : 문경실내체육관
  - 참 석 : 이경임 의원
  
- 청도 학동 클린에코마을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3. 9. 11(수) 11:30
  - 장 소 : 청도 학림공원
  - 참 석 : 김하수 의원
  
-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9. 11(수) 15:00
  - 장 소 : 포항 청하면 유계저수지 등
  - 참 석 : 한창화 의원
  
- 영덕장기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참석
  - 일 시 : 2013. 9. 11(수) 15:00
  - 장 소 : 영덕군민회관
  - 참 석 : 김기홍 의원

- **헌혈의 집 구미센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3. 9. 12(목) 14:00
  - 장 소 : 구미 문화의 거리
  - 참 석 : 윤창욱 의원
  
- **제18회 경북게이트볼 연합장기 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9. 13(금) 14:00
  - 장 소 : 군위 생활체육공원
  - 참 석 : 홍진규 의원
  
- **2014 김천시 주요사업설명회 참석**
  - 일 시 : 2013. 9. 13(금) 14:00
  - 장 소 : 김천시청 2층회의실
  - 참 석 : 나기보·배수향 의원
  
- **제14회 이주노동자 한가위축제 참석**
  - 일 시 : 2013. 9. 15(일) 11:00
  - 장 소 : 구미 마하이주민센터
  - 참 석 : 심정규 의원
  
- **한울원자력본부 노사합동 장보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9. 16(월) 11:00
  - 장 소 : 울진 흥부장터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 추석대비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참석
  - 일 시 : 2013. 9. 17(수) 11:00
  - 장 소 : 의성 전통시장
  - 참 석 : 나현아 의원
  
- 2013 추석장사 씨름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9. 17(화) 14:00
  - 장 소 : 경산 실내체육관
  - 참 석 : 김영식·윤성규 의원
  
- 추석맞이 외국인 근로자 위안잔치 참석
  - 일 시 : 2013. 9. 17(화) 17:30
  - 장 소 : 칠곡 상공회의소
  - 참 석 : 김희원 의원
  
- 2013 문경오미자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9. 20(금) 19:00
  - 장 소 : 문경 동로초등학교
  - 참 석 : 이시하 의원
  
- 실경 뮤지컬 '대가야의 혼 가얏고' 공연 참석
  - 일 시 : 2013. 9. 21(토) 14:00
  - 장 소 :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 참 석 : 광광섭 의원

- 2013 서부시장 안동 간고등어 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9. 23(월) 10:00
  - 장 소 : 안동 서부시장
  - 참 석 : 이영식 의원
  
- 영주시 바르게살기위원회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3. 9. 24(화) 11:00
  - 장 소 : 영주국민체육센터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 2013년 경산장애인 가을축제 참석
  - 일 시 : 2013. 9. 25(수) 10:00
  - 장 소 :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참 석 : 김세호·서정숙 의원
  
- 포항 영일만항 수중환경 정화활동·치어 방류
  - 일 시 : 2013. 9. 26(목) 10:00
  - 장 소 : 영일만항 일원
  - 참 석 : 장경식·장세현·김말분·김원석 의원
  
- 농아인협회장 취임식 및 수화문화예술제 참석
  - 일 시 : 2013. 9. 26(목) 11:00
  - 장 소 : 칠곡 리베라웨딩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청량대운도(淸涼大雲圖) 전시관 개관식 참석**
  - 일 시 : 2013. 9. 26(목) 14:00
  - 장 소 : 군립청송 야송미술관
  - 참 석 : 김영기 의원
  
- **국군체육부대 이전 환영행사 참석**
  - 일 시 : 2013. 9. 26(목) 15:00
  - 장 소 : 문경시청 전정
  - 참 석 : 고우현 의원
  
- **예천군 이장연합회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 참석**
  - 일 시 : 2013. 9. 26(목)
  - 장 소 : 충효테마공원(예천군 감천면 소재)
  - 참 석 : 도기욱 의원
  
- **제7회 장천 코스모스 페스티벌 참석**
  - 일 시 : 2013. 9. 27(금) 10:00
  - 장 소 : 구미 장천한천변
  - 참 석 : 변우정 의원
  
- **제17회 청도군민의 날 행사 및 제62회 군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3. 9. 27(금) 10:00
  - 장 소 : 청도공설운동장
  - 참 석 : 박권현 의원

- 제47회 성주군민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3. 9. 28(토) 09:30
  - 장 소 : 성주중학교 운동장
  - 참 석 : 박기진 의원
  
- 영양향교 석전대제 참석
  - 일 시 : 2013. 9. 28(토) 10:30
  - 장 소 : 영양향교
  - 참 석 : 이상용 의원
  
- 경주JC 「지도자양성을 위한 리더십 아카데미」 참석
  - 일 시 : 2013. 9. 28.(토) 15:40
  - 장 소 : 동국대학교 100주년기념관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제15회 구미시 보육인 대회 참석
  - 일 시 : 2013. 9. 30(월) 18:0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구자근·이태식 의원
  
- 제10회 학산 한마음 대잔치 참석
  - 일 시 : 2013. 10. 1(화) 11:00
  - 장 소 : 포항 학산주공아파트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 2013 칠곡군 새마을지도자 수련 및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0. 1(화) 11:00
- 장 소 : 칠곡 왜관공단운동장
- 참 석 : 추재천 의원

○ 영천 한약과일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수) 18:00
- 장 소 : 영천강변공원 특설무대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제8회 무을 생태고을 버섯축제 참석

- 일 시 : 2013. 10. 3(목) 10:00
- 장 소 : 구미시 무을면 옛 안강초등학교
- 참 석 : 김봉교 의원

○ 영주풍기 인삼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10. 3(목) 19:00
- 장 소 :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
- 참 석 : 김종천 의원

○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10. 4(금) 09:3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장경식 · 김희수 의원

- 2013 경산시 다문화가족 어울림 마당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3. 10. 5(토) 14:00
  - 장 소 : 경산실내체육관
  - 참 석 : 배한철 의원
  
- 제11회 울진금강송 송이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10. 5(토) 15:00
  - 장 소 : 울진엑스포공원
  - 참 석 : 황이주 의원
  
- 제35회 통일서원제 참석
  - 일 시 : 2013. 10. 7(월) 10:00
  - 장 소 : 경주 통일전
  - 참 석 : 최우섭 의원
  
- 경산교육지원청과 경산출신 도의원과의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3. 10. 7(월) 12:00
  - 장 소 : 산들다움(경산시 옥곡동 소재)
  - 참 석 : 김영식·김창숙·배한철·윤성규 의원

## IV. 5분 자유발언

□ 2013년 10월 24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홍광중 의원(교육위원회) ◎

<<공직자의 바른 올바른 자세>>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북부 8개 시·군 출신 홍광중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수록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며 그리고 관련  
모범사례를 통해서 진정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빨리 변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어진 이익으로 봉급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얻어진 수익으로 돈을 벌지만 공무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  
으로 봉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여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가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거 산업사회시대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일치 단합하는 것이 사회적 기제였으며, 그러다보니 강한 충성심을 갖고 오로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우수한 공무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산업화시대의 우수공무원은 실수할 일은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전후해서 유능한 공직자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고 국가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공직자상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공직자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가치의 공유재산을 돌려받고 정책아이디어, 조례 제정 한 건으로 수천억 원이 넘는 효과를 유발하는 것 등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공직자는 아직도 산업화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무조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라와 지역의 발전조차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눈이 녹은 다음에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안전만을 추구하는 공직자는 발전도 가능성도 멀어져갈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상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안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인데 현재 28개 학급인데도 실제 교실은 24개밖에 되지 않아 특별교실 4개를 개조해서 겨우 2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증가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12개 교실을 더 증축해야 하는데도 우선 급한 대로 6개 교실을 먼저 신축하고 나머지 6개 교실은 차후 증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교 교장선생님은 내년 초 교실부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할 학생들을 걱정해서 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사업단 등 백방으로 협의한 끝에 마침내 2014년도 교육청 예산 조기집행 명목으로 나머지 6개 교실을 앞당겨 증축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12개 교실을 동시에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6개 교실 증축공사와 추가 6개 교실 증축공사를 동시에 하게 됨으로써 두 번 설계해야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여 설계비를 반으로 절감시켰으며, 또한 두 번으로 나누어 공사하게 될 경우 학생들이 겪게 될 소음이나 환경공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방해 요인을 감소시켰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교장선생님은 정년퇴직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그저 조용히 보내면 그만인 것을 그분은 아무런 대가와 수고를 따지지 않고 오직 학생을 위해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 모습이 더욱 숭고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공직자는 청렴은 기본이며 지역과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내 자신의 일같이 고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에 안주하기 보다는 진취적인 발상과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가 더 많아지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의 발전과 학생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이 열정을 다하시는 공직자 분들께 뜨거운 찬사를 보내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창숙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학교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촉구 >>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미래 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앞바다의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하여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지 벌써 2년 8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와 경북도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보강, 대피 매뉴얼 마련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방사능으로 안전한 식재료 제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월 8일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시급한 문제로 규정하고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장 가깝고 많은 면적의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경북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일하고 무방비로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도가 보유한 방사능 측정 장비는 폴리마스터(PM1405) 10대입니다. 이 기종은 일반 도민들도 쉽게 구입해서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 장비입니다. 이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방사능 측정을 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경상북도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북도의 방사능 오염에 대처하는 수준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에 보면, 2012년말 기준 일본산 수산물은 4만톤을 수입했고 농산물은 7만 6천톤을 수입하여 유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에서도 수산물은 1.9배 증가<sup>1)</sup>했고, 농산물은 전체 8% 감소했지만, 곡류는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까운 경남도에서는 이미 2011년부터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감마핵종분석기'를 구입하여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측정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 주요 품목은 명태, 고등어, 돔, 꽁치, 갈치, 오징어 순  
- 꽁치 27배, 정어리 38배, 갈치 1.8배, 복어 1.5배 증가

성장기의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방사능에 대한 기준이 성인보다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식품방사능 기준치는 1Kg당 370벵크럴 입니다. 이는 세슘의 핵붕괴가 1초에 370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염된 음식 1Kg을 먹으면 하루에 3,200만개의 핵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장기의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세포 분열속도가 빨라, 적은 양의 방사능으로도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4~5배 높아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도내에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고등학교까지 총 1,928개교 433,191명이 매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방사능으로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할 의무는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위 : 개교(원), 명)

구 분	개 교	학 생 수
어 린 이 집	276	72,307
유 치 원	695	37,967
초 등 학 교	477	135,886
중 학 교	277	89,302
고 등 학 교	193	95,111
특 수 학 교	7	1,453
각 종 학 교	3	1,165
합 계	1,928	433,191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래 세대가 매일 먹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측정 장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11월 정례회에 2014년 예산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북도와 도 교육청에서 각각 예산을 편성하여 방사능에 대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긴급하게 촉구합니다.

정밀검사 장비 1대 구입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라도 해서, 전수검사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검사하여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는 방사능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방사능에 대한 우려와 관심 및 대책을 도정 전반에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현황**

**1. 수산물**

(단위 : 톤, %)

품종별	'12년말	전년 동기 대비			비고
		'12년 8월말	'13년 8월말	증감률	
합계	39,824	27,901	44,204	158	
고등어	2,640	2,448	483	19	
명태	9,057	6,863	3,861	56	
꽂치	1,554	37	987	2,668	
돔	1,877	1,457	1,587	108	
갈치	678	461	861	186	
오징어	506	505	8	1.6	
정어리	293	33	1,266	3,836	
복어	123	75	109	145	
기타	23,096	16,022	35,042	218	

**2. 농산물**

(단위 : 톤, 천\$, %)

구분	'12년말	'12년 8월말		'13년 8월말		증감률 (전년 동기)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계	75,719	52,667	250,346	48,270	202,860	92
곡류	25	18	75	24	103	133
과실류	415	290	1,980	266	2,205	92
채소류	483	331	15,133	303	12,513	92
면류	578	375	1,786	326	1,253	87
기타	74,218	51,653	231,372	47,351	186,786	92

※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12년, '13년도 수치(중량, 금액)는 1~8월까지 누계임.



부 록

- 조례안 : 19건



## ≡ 조 례 안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수 의원연구단체의 선정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우수연구단체 시상)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제2조(기능) 1 ~ 4(생략) 〈신 설〉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제24조(시행규칙 등) (생략)</p>	<p>제2조(기능) 1 ~ 4(현행과 같음) 5. 우수 의원연구단체의 선정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우수연구단체 시상)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5조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보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뿌리기업”이란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代)를 이어 30년 이상 전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2. “산업유산”이란 옛 모습을 간직한 산업건축물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이하 “향토뿌리기업”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 산업유산(이하 “산업유산”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지정과 해제를 위한 심의

2.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지원정책의 자문
3.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활용사업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관련 중요사항 심의·자문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은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여성위원을 30퍼센트 이상, 외부 위원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①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도지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전

2.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3. 기타 위원이 당해 안건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정 등)** ①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은 제3조의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②도지사는 전통산업과 근대산업건축물의 보존·발전을 위하여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사항)** 해당 시장·군수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및 경위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을 매도하고자 하거나, 소유자 등 변경이 있는 때

2. 향토뿌리기업이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때

3.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2조(지정의 해제)** ①도지사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전업, 폐업,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시장·군수 및 당해 기업대표(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승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매수자가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육성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시장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지원 및 활용 등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홍보 및 자긍심 제고사업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전시·체험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장인기업과의 교류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②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또는 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토록 한다.

③ 향토뿌리기업 대표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5조의 보조사업 중 일부를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향토뿌리기업협의회 구성 운영)** ①향토뿌리기업의 상생발전 협의를 위하여 향토뿌리기업 대표자 모임인 향토뿌리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결정한다.

③도지사는 협의회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 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의 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 및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에 대한 시정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우대
5.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

**제9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단장, 기업노사지원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경북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
3. 여성기업인 대표
4. 경제 관련 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경제·경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항)** ①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비율과 구매액의 목표를 설정할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계약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공동 계약 시 참여

4.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5. 그 밖에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②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③제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시정)** ①도지사는 공공  
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기관 평가 반영)** 도지사는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도지사는 여성 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 또는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10월 11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공공기관 평가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성기업 시책평가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제안함.

### 2. 주요 골자

- 안 제13조(공공기관 평가 반영)의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함.

### 3. 참고사항 : 없음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p><b>제13조(공공기관 평가 반영)</b>                      도지사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 지표에 <b>반영하여야 한다.</b></p>	<p><b>제13조(공공기관 평가 반영)</b>                      도지사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 지표에 <b>반영할 수 있다.</b></p>	<p>임의규정으로 수정</p>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20인 이내의”를 “25인 이내의”로, “위원장은 정무부지사, 부위원장은 투자유치본부장이”를 “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부지사,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국장(본부장)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투자유치본부장이”를 “투자유치 담당국장(본부장)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의”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의”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의”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투자금액의”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 금액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고용보조금을”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 보조금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고용인원에”를 “상시 고용인원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교육훈련보조금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고도기술 수반산업”으로 한다.

제19조의1 제2항 중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의2 제목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국비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로 한다.

제19조의2(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를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투자유치본부장이”를 “투자유치 담당국장(본부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9조 내지 제11조 및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규모와 결정방법 등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2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도지사는 동 조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도지사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5조에 의한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사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제3호 중 “3년 이내”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30조제6호 중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를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의2 제2항 중 “제25조제2항의”를 “제25조제1항의”로, “제17조의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은 중복하여”를 제17조 내지 제18조, 제19조의1에 의한 보조금은 중복하여”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제2항, 제3항 개정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b>제2조(정의)</b> 1.~8. (생략) <u>&lt;신 설&gt;</u></p>	<p><b>제2조(정의)</b> 1.~8. (현행과 같음) 9. “<u>관광사업</u>”이란 <u>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u></p>	
<p><b>제3조(투자유치협의회)</b> ①(생 략)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20인 이내의</u> 위원으로 구성하며, <u>위원장은 정무부지사, 부위원장은 투자유치본부장이</u>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 략) ③ ~ ⑨ (생 략)</p>	<p><b>제3조(투자유치협의회)</b> ①(현행과 같음) ② _____ <u>25인 이내의</u> _____ —, <u>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 부지사,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국장(본부장)이</u> 되고, _____ _____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p>	<p>- 투자유치협의회에 관광분야 전문 인사 추가, 위원장 변경, 부위원장 직명 변경</p>
<p><b>제4조(투자유치진흥관)</b> ①투자유치와 관련된 민원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u>투자유치본부장이 투자유치진흥관이</u> 된다. ②(생 략)</p>	<p><b>제4조(투자유치진흥관)</b> ① _____ _____ _____ _____ 투자유치 담당국장(본부장)이 _____ _____ ② (현행과 같음)</p>	<p>- 부위원장 직명 변경</p>

제 정 안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b>제9조(고용보조금 지원)</b></p> <p>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생략)</p>	<p><b>제9조(고용보조금 지원)</b></p> <p>① _____ _____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 제4항의 _____.</p> <p>②(현행과 같음)</p>	<p>- 인센티브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규정</p>
<p><b>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b></p> <p>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생략)</p>	<p><b>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b></p> <p>① _____ _____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14조제1항의 _____.</p> <p>②(현행과 같음)</p>	<p>- 인센티브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규정</p>
<p><b>제11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b></p> <p>① ~ ② (생략)</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b>제11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_____ _____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_____.</p>	

제 정 안	개 정 안	개 정 이 유
<b>제15조(고용보조금 지원)</b> ①도지시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u>고용인원에</u>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b>제15조(고용보조금 지원)</b> ① _____ _____ _____ -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 ② _____ _____ <u>상시 고용인원에</u> _____ _____ _____ _____	- 인센티브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규정 -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을 상시고용인원으로 기준
<b>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b> ①도지시는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u>교육훈련보조금</u> 을 지급할 수 있다. ②(생략)	<b>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b> ① _____ _____ _____ <u>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u> 을 - ②(현행과 같음)	- 인센티브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규정
<b>제17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b>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 범위안에서 기업당 <u>최고 50억원까지</u> 지원할 수 있다.	<b>제17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b> ①(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u>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u> 지원할 수 있다.	- 투자금액 대비 지원 범위 명시



제 정 안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b>제19조의1(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b></p> <p>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 범위안에서 기업당 <u>최고 50억원까지</u> 지원할 수 있다.</p>	<p><b>제19조의1(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b></p> <p>①(현행과 같음)</p> <p>②</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u>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u> 지원할 수 있다.</p>	<p>- 투자금액 대비 지원범위 명시</p>
<p><b>제19조의2(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지원특례)</b>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u>도내로</u>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p>	<p><b>제19조의2(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b>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p>	<p>- 국내 복귀기업, 신·증설투자기업 국비지원 확대</p>
<p><b>제24조(기금관리공무원)</b></p> <p>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본부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전략담당 사무관이 된다.</p> <p>②(생략)</p>	<p><b>제24조(기금관리공무원)</b></p> <p>①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u>투자유치 담당국장(본부장)</u>이 되고, _____</p> <p>_____.</p> <p>②(현행과 같음)</p>	

제 정 안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b>제25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b> 도지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p> <p>①국내·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9조 내지 제11조 및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②~③(생략)</p>	<p><b>제25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b> —————</p> <p>—————</p> <p>①국내·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전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 규모와 결정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p>②~③(현행과 같음)</p>	<p>-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지원</p>
<p>〈신설〉</p>	<p><b>제25조의1(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b></p> <p>①도지사는 동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 강·산·해 프로젝트 연계 서비스 산업 투자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p>

제 정 안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신 설〉</p>	<p>②도지시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5조에 의한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p> <p>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b>  도지시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b>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b>  ① (현행과 같음)</p>	

제 정 안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② &lt;신 설&gt;</p> <p>③ &lt;신 설&gt;</p>	<p>② <u>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u></p> <p>③ <u>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b>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b></p> <p>① (생 략)</p> <p>1.~2. (생 략)</p> <p>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u>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u></p> <p>4 ~ 5. (생 략)</p> <p>6. <u>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u></p>	<p><b>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b></p> <p>①(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_____ <u>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_____.</u></p> <p>4.~5. (현행과 같음)</p> <p>6. _____ <u>_____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u></p>	- 취소 및 반환에 따른 기준시기 명확화
7.~9. (생 략)	7.~9. (현행과 같음)	

제 정 안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b>제30조의2(중복지원의 금지)</b>            ①(생 략)            ②제25조제2항의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17조의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은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p>	<p><b>제30조의2(중복지원의 금지)</b>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5조제1항의 -----            -----            제17조 내지 제18조, 제19            조의1에 의한 보조금은 중            복하여 -----.</p>	<p>- 오타정정 및            대규모투자기업            지원인센티브와            그 외 인센티브            중복지급 방지</p>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한시기구)”를 “건설도시방재국·동해안발전추진단(한시기구)·도청이전추진본부(한시기구)”로 한다.

제9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6호 중 “관광산업·체육 진흥”을 “관광산업·문화교류·체육 진흥”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제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사무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중 “농수산국”을 “농축산국”으로, “농수산국장”을 “농축산국장”으로 하고 제1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제2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제3호 중 “정예농어업”을 “정예농업”으로, 제6호 중 “농·수·축산대책”을 “농·수·축산대책 총괄”로,

제1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제13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제28호 중 “농수산업진흥”을 “농업진흥”으로 하고, 제22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중 “환경해양산림국”을 “환경산림국”으로, “환경해양산림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하고, 제28호 중 “환경보전, 해양·산림”을 “환경보전, 산림”으로 하고, 제12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동해안발전추진단)**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해안발전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원자력클러스터 및 원자력산업 육성 지원
3. 해양개발 및 해양과학 진흥
4. 해양생태계보전 및 해양자원의 연구·개발
5. 연안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
6. 신항만 건설사업 지원 및 항만시설 운영·관리
7. 연안항 개발 및 유지관리
8. 연안항 해양환경 보전관리
9. 연안오염 방지대책 등 해양환경 보전
10. 어촌발전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11. 어업 소득증대사업 추진
12. 어업인력의 육성

13.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수산 분야에 관한 사항
14. 수산물 유통 종합대책 추진
15. 수산물 수출 진흥
16. 수산시설 확충 및 수산자원 보호
17. 천해 어업권 관리 및 증·양식 사업
18. 어업허가
19.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불법어업 지도 단속
20. 어항 및 인공어초시설 관리
21. 내수면 어업 개발 및 자원조성
22. 독도영유권 확립에 관한 사항
23. 기타 동해안발전정책, 해양·수산 진흥 및 독도정책에 관한 사항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시기구)** 동해안발전추진단은 2015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제3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실·국·단·본부의 설치)----- --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 (한시기구) -----	제5조(실·국·단·본부의 설치)----- --건설도시방재국·동해안발전추진 단(한시기구)·도청이전추진본부(한시 기구)
제9조(문화관광체육국) (생략) 1.~14. (생략) <span style="float: right;">〈신 설〉</span> 15. (생략) 16. ---- 관광산업·체육 진흥 -----	제9조(문화관광체육국) (현행과 같음) 1.~14. (현행과 같음) 15. 국제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사무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17. ---- 관광산업·문화교류·체육 진흥 ----
제10조(농수산물국) 농수산물국장 ----- 1. 농어촌 ----- 2. 농어업 ----- 3. 정예농어업 ----- 4.~ 5. (생략) 6. ----- 농·수·축산대책 ----- 7.~11. (생략) 12. 농수산물 ----- 13. 농수산물 ---- 14. ~ 21. (생략) 22. 수산시설 확충 및 수산자원 보호 23. 천해 어업권 관리 및 증·양식 사업 24. 어업허가 25.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불법어업 지도 단속 26. 어항 및 인공어초시설 관리 27. 내수면 어업 개발 및 자원조성 28. ---- 농수산업진흥 -----	제10조(농축산물국) 농축산물국장 ----- 1. 농촌 ----- 2. 농업 ----- 3. 정예농업 ----- 4.~ 5. (현행과 같음) 6. ----- 농·수·축산대책 총괄 ----- 7.~ 11. (현행과 같음) 12. 농산물 ----- 13. 농산물 ---- 14. ~ 21. (생략) <span style="float: right;">〈삭제〉</span> <span style="float: right;">〈삭제〉</span> <span style="float: right;">〈삭제〉</span> <span style="float: right;">〈삭제〉</span> <span style="float: right;">〈삭제〉</span> <span style="float: right;">〈삭제〉</span> <span style="float: right;">〈삭제〉</span> 28. ---- 농업진흥 -----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연안항 해양환경 보전관리</li> <li>9. 연안오염 방지대책 등 해양환경 보전</li> <li>10. 어촌발전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li> <li>11. 어업 소득증대사업 추진</li> <li>12. 어업인력의 육성</li> <li>13.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수산분야에 관한 사항</li> <li>14. 수산물 유통 종합대책 추진</li> <li>15. 수산물 수출 진흥</li> <li>16. 수산시설 확충 및 수산자원 보호</li> <li>17. 천해 어업권 관리 및 증·양식 사업</li> <li>18. 어업허가</li> <li>19.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불법어업 지도 단속</li> <li>20. 어항 및 인공어초시설 관리</li> <li>21. 내수면 어업 개발 및 자원조성</li> <li>22. 독도영유권 확립에 관한 사항</li> <li>23. 기타 동해안발전정책, 해양·수산 진흥 및 독도정책에 관한 사항</li> </ul>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5,096명”을 “5,09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22명”을 “1,924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합계란 “5,096”을 “5,098”로, 일반직 소계란 “1,498”를 “1,500”으로, 일반직 3급 중 합계란 “10”을 “11”로, 본청란 “8”을 “9”로, 일반직 5급이하 합계란 “1,410”을 “1,411”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별	정 원		존 속 기 한	비고
	계	내역		
합 계	1	일반직 : 3급 1		
동해안발전 추진단	1	일반직 : 3급 1	2015. 8. 3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가관리 한시정원의 특례) 제6조 별표 4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5급이하 2명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정원을 초과한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 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b>제2조(정원의 총수)</b>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096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922명</p> <p>2.~4. (생략)</p> <p><b>[별표 3]</b> <b>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colspan="6">기관별</th> </tr> <tr> <th>합 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경제자유구역청</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5,09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일반직</td> <td>소계</td> <td>1,49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0</td> <td>8</td> <td></td> <td>1</td> <td>1</td> </tr> <tr> <td>5급 이하</td> <td>1,4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b>[별표 4] 한시정원표(제6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기관별</th> <th colspan="2">정 원</th> <th rowspan="2">존속기한</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계</th> <th>내역</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2</td> <td>일반직 : 5급이하 2</td> <td></td> <td></td> </tr> <tr> <td>일자리경제본부</td> <td>2</td> <td>일반직 : 5급이하 2</td> <td>2013. 12. 31</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5,096						:							일반직	소계	1,498		-			:						3급	10	8		1	1	5급 이하	1,410		-			: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고	계	내역	합 계	2	일반직 : 5급이하 2			일자리경제본부	2	일반직 : 5급이하 2	2013. 12. 31		<p><b>제2조(정원의 총수)</b> ----- ----- 5,098명 ----- -----.</p> <p>1. ----- : 1,924명</p> <p>2.~4. (현행과 같음)</p> <p><b>[별표 3]</b> <b>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colspan="6">기관별</th> </tr> <tr> <th>합 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경제자유구역청</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5,09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일반직</td> <td>소계</td> <td>1,50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1</td> <td>9</td> <td></td> <td>1</td> <td>1</td> </tr> <tr> <td>5급 이하</td> <td>1,41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b>[별표 4] 한시정원표(제6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기관별</th> <th colspan="2">정 원</th> <th rowspan="2">존속기한</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계</th> <th>내역</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1</td> <td>일반직 : 3급 1</td> <td></td> <td></td> </tr> <tr> <td>동해안발전추진단</td> <td>1</td> <td>일반직 : 3급 1</td> <td>2015. 8. 31</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5,098						:							일반직	소계	1,500		-			:						3급	11	9		1	1	5급 이하	1,411		-			: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고	계	내역	합 계	1	일반직 : 3급 1			동해안발전추진단	1	일반직 : 3급 1	2015. 8. 31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5,096																																																																																																																																																								
:																																																																																																																																																									
일반직	소계	1,498		-																																																																																																																																																					
	:																																																																																																																																																								
	3급	10	8		1	1																																																																																																																																																			
	5급 이하	1,410		-																																																																																																																																																					
: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고																																																																																																																																																					
	계	내역																																																																																																																																																							
합 계	2	일반직 : 5급이하 2																																																																																																																																																							
일자리경제본부	2	일반직 : 5급이하 2	2013. 12. 31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5,098																																																																																																																																																								
:																																																																																																																																																									
일반직	소계	1,500		-																																																																																																																																																					
	:																																																																																																																																																								
	3급	11	9		1	1																																																																																																																																																			
	5급 이하	1,411		-																																																																																																																																																					
: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고																																																																																																																																																					
	계	내역																																																																																																																																																							
합 계	1	일반직 : 3급 1																																																																																																																																																							
동해안발전추진단	1	일반직 : 3급 1	2015. 8. 31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적기투자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재원을 말한다.

**제3조(전출시기 등)** ① 경상북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기 말일이 속한 전월(前月)까지 도 금고에 납입된 세액을 세목별 내역과 함께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 운영상 긴급을 필요로 하는 등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10월 14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 이유

- 효과적인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을 위하여 전출금에 대한 정산기준과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함.

## 2. 주요 내용

- 안 제3조의 조제목 “전출시기 및 방법 등”을 “전출시기 등”으로 하고, 제1항의 전출금의 정산 기준과 시기를 규정함.

##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의 조제목 “전출시기 및 방법 등”을 “전출시기 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경상북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기 말일이 속한 전월(前月)까지 도 금고에 납입된 세액을 세목별 내역과 함께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 운영상 긴급을 필요로 하는 등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p><b>제3조(전출시기 및 방법 등)</b>  <u>①경상북도지사는 「법」 제 11조제2항에 따라 매분기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 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u>                      ②(생략)</p>	<p><b>제3조(전출시기 등) ①</b>경상북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기 말일이 속한 전월(前月)까지 도 금고에 납입된 세액을 세목별 내역과 함께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 운영상 긴급을 필요로 하는 등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p> <p>②(제정안과 같음)</p>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도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경상북도 인권센터의 지정)** ①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 파악 등 관련 실태조사
  2.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6.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지정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④인권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법인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또는 연구기관에서 인권관련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3. 품위손상, 비밀누설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제13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라 함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라 함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안정적 혈액수급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을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의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사업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

(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2. 헌혈권장사업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평가)** 도지사는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장소

**제7조(포상)** 도지사는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  
최적화를 통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성 함양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경상  
북도내에 설치·신고한 시설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도지사는 시설 이용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  
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  
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 연구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법에 따른 신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 등 미신고 시설 이용장애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이용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시설에 대하여 법인운영 시설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등)** ①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설의 비용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사업비
2.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3.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4.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도지사는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침해 사례가 확인

되었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도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 라. 외국인 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 바. 다문화가족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도지사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 및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도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 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자녀 글로벌 리더 육성 지원
9. 결혼이민자 모국 네트워크 강화 지원
10.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 2 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 제8조(협의회 설치)** ①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③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도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협의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 3 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참여

**제15조(자문회의의 설치)** ①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회의의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자문회의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자문회의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①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 4 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사업 추진 등

**제19조(시책사업 추진)** ①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①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세계인의 날)** ①도지사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경상북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4조(포상)** ①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5조(명예도민)** ①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의 시행으로 「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②「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제8조의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본다.

③「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는 제15조의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로 본다.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참전유공자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사는 도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 유가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기간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2조(정의) &lt;생략&gt;</b></p> <p>1. &lt;생략&gt;</p> <p>2. &lt;생략&gt;</p> <p>3. &lt;생략&gt;</p> <p><u>(신설)</u></p> <p>4. &lt;생략&gt;</p> <p>5. &lt;생략&gt;</p> <p>6. &lt;생략&gt;</p>	<p><b>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b></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u>참전유공자 유가족</u>”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b>제8조(참전명예수당) ①도지사는 도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b></p> <p><u>(신설)</u></p> <p>② &lt;생략&gt;</p>	<p><b>제8조(참전명예수당) ①도지사는 도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 유가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한다.</b></p> <p>②제1항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기간은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유학”(이하 “농촌유학”이라 한다)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가 또는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유학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어촌유학 활동가”(이하 “농촌유학 활동가”라 한다)란 농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의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센터)**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유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도지사는 농촌유학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경상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분야 연구원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농촌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경상북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10월 14일

제안자 : 농 수 산 위 원 장

###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체계를 맞추고 농어촌유학의 홍보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어 수정 제안함.

### 2. 주요골자

- 안 제1조(목적)에 명기된 “농촌”을 “농어촌”으로 일괄 수정하고
- 안 제2조(정의) “제4호에 농어촌의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라고 신규삽입
- 안 제6조(협의회구성) 제4항제1호의 “경상북도의원 2명”을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수정
- 안 제11조(홍보) “도민들에게”를 삭제토록 함.

###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목적)에 명기된 “농촌”을 “농어촌”으로 일괄 수정하고
- 안 제2조(정의) “제4호에 농어촌의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5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라고 신규삽입
- 안 제6조(협의회구성) 제4항 제1호의 “경상북도의원 2명”을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수정
- 안 제11조(홍보) “도민들에게”를 삭제토록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농촌유학</u>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u>농촌지역의</u> 활력증진과 도시와 <u>농촌의</u>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유학”(이하 “농촌유학”이라 한다)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가 또는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li> <li>2. “농어촌유학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li> </ol>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농어촌유학</u>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u>농어촌지역의</u> 활력증진과 도시와 <u>농어촌의</u>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유학”(이하 “농촌유학”이라 한다)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가 또는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li> <li>2. “농어촌유학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li> </ol>	조례 체계통일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p>3. “농어촌유학 활동가” (이하 “농촌유학 활동가”라 한다)란 농촌 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 하고, 돌봄 기능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b>제6조(협의회 구성)</b>            ① ~ ③ :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u>경상북도의원 2명</u>            2. ~ 7. : 생략</p> <p><b>제11조(홍보)</b> 도지사는 농촌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경상북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p>	<p>3. “농어촌유학 활동가” (이하 “농촌유학 활동가”라 한다)란 농촌 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 하고, 돌봄 기능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4. “<u>농어촌의 범위</u>”를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u>으로 한다.</p> <p>① ~ ③ :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u>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u>            2. ~ 7. : 생략</p> <p><b>제11조(홍보)</b> 도지사는 농촌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경상북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p>	<p>농어촌범위 신규삽입</p> <p>자구수정</p> <p>“도민들에게” 삭제</p>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급식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축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수·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
  -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 라.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마. 그 밖에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농산물로 지정받은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농·특산물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친환경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시·군의 재정 지원 분담 방안
3. 안전한 친환경농·수·축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경상북도내 친환경농·수·축산업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참여 방안
5.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의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방안
6.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을 교육감 및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친환경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제1항의 급식 지원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 및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른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②현물지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곳을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급식경비 등의 지원 규모와 내역 및 제1항에 따른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분담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④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하여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우수식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광역단위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도지사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장 등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농·수·축산물을 식자재로 사용 시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학생 지도 계획
  6. 친환경학교급식 시행 계획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신청 서식, 절차, 시기, 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 업무관련 담당국장, 경상북도의회 추천의원으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민간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1.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실·국장
2. 학부모단체 추천인
3. 농업인단체 및 농어업 관련단체 추천인
4. 교원단체 추천인
5. 영양사협회 추천인
6. 학교급식관련 단체 및 업체 추천인
7. 그 밖에 관련 전문가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중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실·국장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학교급식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④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지원규모와 내역, 시장·군수의 재정분담 방안
2. 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식생활 습관교정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실시 방안
5.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도지사는 지원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친환경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군수 또는 급식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우수식자재의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로 침체 되어가고 있는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농어업인”이란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으로 지역 농어촌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경상북도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고령화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이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중장기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는 「경상북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시 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농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추진계획은 법 제10조 2의 1항에 의거 경상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서 확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 농어촌 고령화 실태 추이
2.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 수준
4.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
5. 고령 농어업인의 지원 시책 현황
6. 그 밖에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대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한 후 중장기 추진 계획을 비롯, 연관 시책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항의 내용과 같다.

1. 고령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소득창출 사업
2. 고령농어업인 주거·생활환경 개선 사업
3. 고령농어업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4. 농어촌 유무형 자원 활용, 공동 문화조성 사업
5. 귀농귀촌, 교육 등 농어촌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고령화된 농어촌의 활력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 등 제반 회계 법규,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적공  
사비 단가를 적용한다.

1.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한  
경우
2. 그 밖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지사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중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를 "법 제31조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 하도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생산자재 사용 및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50”을 “60”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대한설비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12. 경상북도의회 의원

제12조 중 “제9호”를 “제12호”로, “제10호”를 “제13호”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며, “건설행정총괄”을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실무팀) ①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구성·운영한다.

②실무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팀장은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 건설산업 관련 공무원
  2. 건설산업 관련 협회 직원
  3.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 ④ 그 밖에 실무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팀의 회의를 거쳐  
실무팀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 중 “협의회”를 “협의회 및 실무팀 회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분할발주 등)</b>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b>공구 분할 가능여부</b>를 검토·시행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b>제5조(분할발주 등)</b> ----- ----- ----- ----- ----- <b>공구 분할</b>이나 <b>분할발주 가능여부</b> 등을 적극적으로 -----.</p> <p><b>제5조의2(실적공사비 적용 제한)</b>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li> <li>2. 그 밖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li> </ol> <p><b>제5조의3(주계약자 공동도급제)</b> 도지사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li> <li>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li> <li>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현 행	개 정 안
<p><b>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b>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하도급 계약 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신 설〉</p>	<p><b>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b> --- 법 제31조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p> <p>-----</p> <p>-----</p> <p>-----</p> <p>-----</p> <p><b>제6조의2(실태조사)</b> ①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 하도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li> <li>2. 지역의 생산자재 사용 및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④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b>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b> (생략) 1. (생략)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p>	<p><b>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b>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_____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60</p>
<p><b>제10조(협의회 구성) ①(생략)</b> ②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④(생략)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2. ~ 9. (생략) 10. 그 외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 &lt;신 설&gt; &lt;신 설&gt;</p>	<p><b>제10조(협의회 구성) ①(현행과 같음)</b> ②_____명 ③~④(현행과 같음) ⑤_____사람 _____</p> <p>1. _____ 행정지원국장 2. ~ 9. (현행과 같음) 10. 대한설비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 11.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12. 경상북도의회 의원 13. 그 외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p>
<p><b>제12조(임기)</b>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10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b>제12조(임기)</b> _____ 제12호 _____ 제13호</p>
<p><b>제13조(협의회 운영) ①~②(생략)</b> ③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행정총괄 사무관이 된다.</p>	<p><b>제13조(협의회 운영) ①~②(현행과 같음)</b> ③_____명 _____명 _____업무담당</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4조(수당) <u>협의회</u>에 참석한 건설 산업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의2(실무팀) ①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구성·운영한다.          ②실무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팀장은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 건설산업 관련 공무원          2. 건설산업 관련 협회 직원          3.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 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④그 밖에 실무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팀의 회의를 거쳐 실무팀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4조(수당) <u>협의회 및 실무팀 회의</u>—          -----          -----          -----          -----.</p>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지·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 용수, 발전, 홍수조절,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1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재해”란 저수지·댐의 제체 및 그 부속시설의 붕괴·유실 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저수지·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댐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행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4.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담당과장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 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  
하여 학식이나 안전점검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의 간사(업무담당사무관)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장소 및 안전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 개최 시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명과 간사·서기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인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 “건설도시방재 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당연직 위원인 “건설도시방재국장”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실무기획단의 단장인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구성) ①(생략)</b>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u>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u>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u>건설도시방재국장</u>, 정책기획관이 된다.                      ③(생략)</p> <p><b>제8조(실무기획단 구성 및 운영)</b>                      ①(생략)                      ②실무기획단의 단장은 <u>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u>이 되고, 단원은 업무소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생략)</p>	<p><b>제4조(구성) ①(현행과 같음)</b>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u>건설도시방재국장</u>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③(현행과 같음)</p> <p><b>제8조(실무기획단 구성 및 운영)</b>                      ①(현행과 같음)                      ②실무기획단의 단장은 <u>건설도시방재국장</u>이 되고, 단원은 업무소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은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본문”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의2(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기준) 적용시 도  
내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분야”는 “환경 분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는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분야”는 “환경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여한 자는”은 “참여한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대하여는”은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5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게 할 수 있다.

1.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중 도내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기업(대규모 투자기업 범위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를 적용한다)
2. 신규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으로 해당 산업단지 관할 시장·군수의 추천이 있는 기업
3.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제9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 “사람”으로 하고 “환경분야”는 “환경 분야”로 하고, 제3항 중 “자로서”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제8호까지 중 “풍부한 자”는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자”는 “사람”으로 하고, 제3호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로 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없는다”를 “없음”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중 “처리하기 위하여”는 “처리할”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부의 안전과”는 “회의에 부쳐진 안전과”로 한다.

제15조 중 “부의안전의”는 “회의에 부쳐진 안전의”로 한다.

제18조 중 “대하여는”은 “대해서는”으로 하고, “범위 내에서”는 “범위에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는 경상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상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 ----- ----- ----- ----- <u>필요한</u> ----- -----.</p>
<p><b>제2조(적용범위)</b>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 등”이라 한다)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승인·협의를 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p>	<p><b>제2조(적용범위)</b> ----- ----- ----- ----- ----- ----- 다만, 제8조의2(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기준) 적용시 <u>도내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를 포함</u> 한다.</p>
<p><b>제4조(구성)</b> ①지원센터의 장은 일반산업단지등의 개발업무 담당실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u>환경분야</u>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p>	<p><b>제4조(구성)</b> ①----- ----- ----- <u>환경 분야</u> ----- -----.</p>

현행	개정안
<p><b>제5조(기능)</b></p> <p>1. ~ 4. (생략)</p> <p>5.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p> <p><b>제6조(센터장 등의 직무)</b> ①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통괄한다.</p> <p><b>제7조(자문단)</b> ①지원센터의 장은 일반산업단지등의 개발업무 담당실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p> <p>②자문단에 참여한 자는 관련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자문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5조(기능)</b></p> <p>1. ~ 4. (현행과 같음)</p> <p>5. 「환경영향평가법」----- ----- -----</p> <p><b>제6조(센터장 등의 직무)</b> ①----- ----- ----- 총괄한다.</p> <p><b>제7조(자문단)</b> ①----- ----- ----- 환경 분야 ----- ----- -----.</p> <p>②----- 참여한 사람은 ----- -----.</p> <p>③-----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 ----- ----- 대해서는 ----- -----.</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9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총수는 해당 분야별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수로 산정한다.</p>	<p>제8조의2(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 기준)</p>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시설용지를 우선 분양 받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중 도내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기업(대규모 투자기업 범위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를 적용한다)</li> <li>2. 신규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으로 해당 산업단지 관할 시장·군수의 추천이 있는 기업</li> <li>3.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li> </ol> <p>제9조(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 30명 ----- ----- -----.</p>

현 행	개 정 안
<p>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실국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 1명</p> <p>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u>환경분야</u>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5명</p> <p>3.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3명</p> <p>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3명</p> <p>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명</p>	<p>②----- ----- <u>사람</u> ----- -----.</p> <p>③----- <u>사람으로서</u> ----- -----.</p> <p>1. ----- ----- ----- <u>사람</u> -----</p> <p>2. ----- <u>환경 분야</u> ----- ----- ----- <u>풍부한 사람</u> ----- ----- <u>사람</u> -----</p> <p>3. ----- ----- ----- ----- <u>1명</u> ----- ----- <u>사람</u> -----</p> <p>4. ----- ----- ----- ----- <u>사람</u> -----</p> <p>5. ----- ----- ----- ----- <u>사람</u> -----</p>

현 행	개 정 안
<p>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명</p> <p>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명</p> <p>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명</p>	<p>6. _____          _____          _____ 사람 _____</p> <p>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_____          _____ 국가교통위원회          _____ 국가교통위원회          _____ 사람 _____</p> <p>8. _____          _____          _____          _____ 사람 _____</p>
<p><b>제11조(위원장 직무) ①(생략)</b>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11조(위원장 직무) ①(현행과 같음)</b>          ②_____          _____ 없을 _____          _____          _____ 없을 _____          _____.</p>
<p><b>제12조(회의운영) ①·②(생략)</b>          &lt;신 설&gt;</p>	<p><b>제12조(회의운영) ①·②(현행과 같음)</b>          ③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13조(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u>처리하기 위하여</u>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p>	<p>제13조(간사 및 서기) -----  <u>처리할</u> -----  -----  -----  -----.</p>
<p>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이 부의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용역 또는 사업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회의에서 제척된다.</p>	<p>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u>회의에 부쳐진</u> -----  -----  -----  -----.</p>
<p>제15조(의견의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u>부의안전의</u>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5조(의견의 청취 등) -----  <u>회의에 부쳐진 안전의</u> -----  -----  -----  -----.</p>
<p>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u>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u>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u>대하여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8조(수당 등) -----  <u>대해서는</u> ----- <u>범위에서</u> -----  -----  -----  ----- <u>대해서는</u>  -----.</p>

# 의정 활동 보고서

(제264회 임시회·제265회 임시회)



2013. 11 인쇄 / 2013. 1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46

FAX : 602-5140



<비매품>